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3. 8.

증권 선물 위원회

- 1. 일 시 : 2023년 3월 8일(수) 14:30~18:27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원장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9호 『삼화전자공업㈜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 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제19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회사는 재고자산의 평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유· 무형자산의 평가 등 재무제표 작성 전반에 있어 회계처리기 준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됨. 다만, 위반행위 인지 후 회사의 회계인력을 보강하고 ERP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인의 수정권고 후 재무제 표를 단기간에 수정·공시하여 정보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던 점 등은 조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경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삼화전자공업㈜의 2018년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원안에서 기본과징금 50% 를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아울러, 감사인의 경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에 있어 전문가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 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또한, 자유선임된 감사 인에 비해 더욱 엄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정감사인이었 음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수준에서 일부 가중하여 조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별표7] 양정 기준 중 가중사유인 "그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삼화전자공업㈜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에 대한 조치를 원안에서 1단계 가중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4호 『㈜신흥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물창고가 아니라 관리창고들로서 ERP상에 설정된 창고 세 군데에서 오류 가 발생하였는데 결산과 주주총회 일정을 감안할 때 국내 외 선출고창고 등의 실제 재고수량을 품목 별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가피하게 보수적으로 국내 외 선출고창고에 있는 재고가 전수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음. 그다음으로 이 오류를 발견한 사실관계는 당사가 감사인보다 먼저 상품재고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역수입 상계창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 후 결산을 위한 재고 실사과정에서 안산분리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는 점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시정요구라는 것이 2014년부터 2017년 재무제표 재작성해서 공시하라는 것인지? 그렇지만 회사는 이미 2018년, 2019년 재무제표는 수정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들은 이미 오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 만약 시정요구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주석으로 공시해서 가능할 문제라면 재무제표 재작성 대신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음.
- (위원장) 제34호 안건은 금감원 조치안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회사에 대한 시정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수정·공시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동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수정의

결하도록 하겠음.

-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 의결안건 제35호 『㈜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 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 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진정정에 따른 2단계 감경 외 1단계 추가감경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림. 첫 번째는 회사가 외부와 공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를 감사인이 식별한 부정감사에 대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며, 식별된 부정행위를 회사의 감사에게 고지하고 회사의 외부기관을 통한 진상조사 요구를 통하여 횡령 등을 파악하였음. 두 번째, 감사인은 다년간 다수 거액의 수정사항을 제시하는 등 충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생각함.
 - (위원) 2013년부터 감사를 쭉 해오셨는데 2017년도 반기 검
 토 시에 부정 징후를 식별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 ▶ (진술인) 2016년도 기말감사 당시 회계 이슈(issue) 중 하

나가 종속회사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3억 원 대손 이슈(issue)가 존재하였음. 그렇지만 감사보고서일 근접일에 회사는 3억 원에 대한 입금증빙을 감사인에게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대손 설정을 하지 않고 감사를 마무리한 바 있음. 그 이후 2017년도 반기 검토과정에서 해당 3억 원에 대한 매출채권이 동일한 거래처에 살아있는 것을확인하고 감사인은 그 사유를 회사에 추궁하였고 감사인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부정 징후라고 판단을 하여 회사를 통해 부정 진상조사를 요구 및 재감사까지 이루어지게 된 상황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회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법행위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것에서 더 나아간 행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원장) 제35호 안건 관련하여 감사인은 회사의 부정행위 징후를 최초로 식별하고 내부감시기구에 고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회사의 임직원이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재무제표 재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재의 조치수준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외부감사규정』[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회사의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를 원안에서 1단계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ㅇ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36호 『㈜OOOO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가 영위한 중고휴대폰 매매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전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해 발생함. 경찰, 검찰 수사결과 회사와 당시 경영진은 조세범처벌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주범인 OOO에 대해서만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수사기관이 당사 전전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음에도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위반동기에 대해 '고의'로 판단하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회사에 사전통지하였지만 수사결과 이후에 현 최대주주와 경영진은 당시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는지 파악할수 없음. 검찰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게 되는데, 현 주주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검찰고발 조치를 제외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요청 드림.

- (진술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찰고발 조치만은 피해 주시기를 간청 드림. 우선, 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본 건과 관련한 외감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모든수사를 받아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음. 그리고 전전 경영진의 행위에 기인하였고 전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모두수정하였음. 따라서 본 건을 검찰고발 할 경우에는 전전경영진 및 전 경영진과 관련 없는 주주 그리고 현 경영진의 피해만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함.
- (위원장) 실사과정이 있었는데 과거 회사를 인수했을 때 중고폰 거래 부분에 대한 것을 실사과정에서 인지를 못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2018년 결산 때 전 실사주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3억 원을 지급 받은 부분은 중고 휴대폰 사업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보존 받고 모든 권리 여부를 인수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제가 그때 당시에 인수하는 과정에는 없었음. 그 다음에 13억 원에 대해서는 인수과정에 미수채권에 대한 보장을 매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제36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의결안건 제37호 『SK㈜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UBS AG는 1998년에 설립되어 스위스에 있는 은 행인데 주식 차입거래에 대해서는 홍콩의 SLB 데스크를 통해 ▶▶▶이라는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시스템은 홍콩시간으로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 까지, 영국 표준시간으로는 글로벌 0시 전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 1시간 동안 정비작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 자 동적으로 시스템이 정지가 됨. 그래서 이 시간대에 주식 을 차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입내역을 부득이 수작업으 로 입력할 수밖에 없었는데, 2021년 5월25일 홍콩 데스크 에서 이 시간대에 수작업으로 주식 차입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본 건 위반이 발생하였음. 5월 25일 당일 07시28분에 UBS는 SK㈜ 주식 매도스왑을 해달 라는 스왑계약 고객의 요청을 받음. 이에 따라 UBS는 SK ㈜ 주식 3,000주를 우선 차입하였고 이 차입한 수량 3,000 주를 Borrow Book에 수작업으로 옮겨 입력해야 하는 상 황이었는데 당시 대차플랫폼 화면상에서는 SK㈜ 주식 차 입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줄 바로 아래 종목명이 유사한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triangle$ 주식의 차입내역이 있었고, 여기에 40,000주가 이미 차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 서 담당직원은 Borrow Book에 SK㈜ 주식에 입력할 수량 을 착각해서 바로 아래 행에 있는 △△△△△△㈜ 주식 수량인 40,000주를 SK㈜ 주식란에 입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SK㈜ 주식의 실제 가용 잔고보다 많이 입력되는 오 류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와 같이 SK㈜ 주식 차입잔고로 40,000주가 입력이 된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이 승인되어 이 내역이 증권사에 제출되었고 증권사는 이 수량을 거래 하기 위해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 것임. 이후 ▶▶ ▶이 자동으로 바로 잘못된 잔고 40,000주를 3,000주로 돌 려놓았고 당일 검토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17,418주가 차입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간 공매도 주 문임을 발견함. 이를 알게 된 즉시 외부차입을 통해 총 40,000주를 차입하였고 결제이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였으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러한 내 용을 계열사인 UBS 서울지점을 통해 거래소에 신고를 하 였음.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체결된 무차입공매도 부분인 17,418주와 증권사가 이를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 호가를 하였으나 취소정정되는 등 이렇게 미체결된 호가 부분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을 공매도 위반 주문금액 기준 으로 산정하여 UBS에 대해 35억 9,630만 원의 과징금 부 과조치를 예정하신 상황임. 우선, 저희는 공매도 위반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한 공매 도 주문금액은 무차입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체결되지 않은 미체결된 호 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첫째, 5월25일에 UBS AG가 증권사에 요청한 SK㈜ 주식 차입공매도 주문은 41,250주였음. 결과 적으로 이 수량 중에서 당일 17,418주가 부족해서 저희는 이 17,418주가 위반된 무차입공매도 수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차입공매도 주문을 VWAP으로, 즉, 장중시간평균가 격을 추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사의 매매프 로그램이 VWAP을 추종하도록 거래소에 호가를 냈는데 그러다보니 실시간으로 이 호가가 정정되거나 취소되어 다시 제출된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미체결된 경우도 있 음. 시스템상으로도 UBS AG는 41,134주와 116주로 총 41,250주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증권사에 위탁하였고, 증 권사의 로그기록도 동일하게 41,250주 주문을 위탁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증권사 시스템에서 VWAP. 즉, 시장의 평균가격을 추종하면서 전 산으로 분할되어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들의 내역임. 이 자료가 방대해서 8시48분부터 9시10분 사이에 당일 앞단 의 일부 거래만 첨부를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증권 사 시스템에서 호가가 수백 개로 분할되어 거래소에 제출 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 내역은 매도호가가 몇 주 정도 제출되었는데 해당 시점에 이에 맞는 상대 매 수호가가 없어서 체결이 안 되어서 한 10초에서 20초 후 에 다시 정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매도호 가로 26주를 제출했는데 상대 매수호가가 일부 밖에 없어 서 일부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미체결된 상황을 나타내는 거래도 있음을 알 수 있음. 이 'Cancelled'나 'Amended'라 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러한 내용임. 또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미체결 호가가 몇 천 주나 몇 만 주 단위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주가 제출되었다가 이에 대응하는 상대 매수호가가 없어서 체결되지 않으면 바로 취소되거나 정정되는 경우여서 이렇게 몇 주의 극히 미미한 수량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미칠 우 려도 없었으며, 게다가 Up-tick rule을 준수하면서 VWAP 가격, 시장평균가격을 추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격변동 성이 클 우려도 없었음. 그런데 이렇게 위탁자의 주문이 각각 얼마나 분산이 되어 몇 주의 호가가 거래소 시장에 제출될 것인지, 그리고 이중에서 얼마만큼 체결될지는 위 탁자는 주문시점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러한 미체결 결과는 사실 위탁자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 고 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증권사의 탓도 아니고 당시 시장에 상대 매수호가가 있으면 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는 전적인 시장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임. 그렇지만 이렇게 미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 감원에서는 전적으로 UBS AG의 책임이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임. 위탁자의 주문범위를 초과한 호가수정 부분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 정규제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 는 것이 아닌가 우선 생각됨. 둘째, 저희가 알기로 과거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조치가 된 경우에는 무차입공매 도 주문이 체결된 경우를 대상으로 조치를 하였고, 미체 결이 된 경우를 위반으로 삼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음. 그리고 2021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도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행위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위반한 공매도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됨. 저희는 행정법규 명확성 원칙에서도 이러한 부분 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과징금 부과근거가 되는 법 제429조의3에서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그 위반 한 공매도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위탁한 공매도 주문수량 중 차입잔고가 부족하여서 위반이 된 주문수량은 17,418 주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 는 것이 이 법 문언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임. 또한, 주문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거래를 위탁하는 요청을 말하고 호가는 매매를 위해 거래 소 경쟁매매시스템에 제출되는 표시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에서는 이를 구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시 장질서 교란행위에서는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라고 하여 거래소에 제출되는 형태들은 '호가'라고 표현하고 있음. 저희는 법 문언상 이 공매도에서 이 매도. 즉, 주식을 파는 개념과 매도가 되지 않은 미체결의 호가 개념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생 각하며, 따라서 미체결된 호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것은 행정법규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됨. 셋째, 2021년 법 개정으로 공매도 위 반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 체계로 변동이 되었는데 과 징금 제도는 부당이득 환수라는 취지가 내재되어 있음. 기존 6,000만 원의 과태료로는 제재가 미흡한 측면이 있 고 또 불법이득을 몰수·박탈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도입 할 필요도 있어 이렇게 법이 변경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 한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산정은 실제 체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으로 생각됨. 그리고 공매도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에는 본 건과 같이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가 또 많으 며, 스왑투자자와의 스왑거래를 헷지(hedge) 하기 위해 부 득이 공매도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과거 한 종목당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 던 것을 이렇게 미체결 호가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과징금 을 부과하게 된다면 수백 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1.5 배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시장교란행위 보다 위법성이 덜한 단순 공매도 위반 사안에서 훨씬 큰 규모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규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은 UBS AG의 위반 동기를 중대한 과실. 즉,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데 저희는 단순 과실 사안이 아닌가 생각됨. 법적으로 중 과실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바로 아래 행에 있었 던 종목명이 유사한 △△△△△△㈜의 주식 수량을 실 수로 SK Inc의 Borrow Book에 입력하면서 발생한 종목을 착오한 사안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통상적인 사람 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불과하며 이를 두고 '중과실' 상태. 즉,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참고할 사항으로 과거

과태료 부과 시절에도 관련 규정에서 중과실의 의미에 대 해서는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 '등'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 '중과실'은 계속적 위반, 반복적 위반과 적어도 동등한 행 위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 건과 같이 단순 일회성 의 종목 착오사항이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지는 의문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다수 종목이 위반된 경우, 위반이 거듭 반복된 경우, 알람이나 경고가 작동되 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중과실'로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과거 조치사례도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래서 저희 생각에는 본 건을 단순과실로 평가해 주실 것 을 요청 드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UBS AG는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국거래소에 자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금감원의 입장은 UBS AG 서울지점에 한국거래소가 일상점검 E-mail을 보낸 바가 있고, UBS AG가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시점은 그 이후이 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없어서 감경사항이 아니라고 함. 그런데 정작 한국거래소가 보낸 E-mail의 내용은 UBS AG에 보낸 것이 아니라 UBS AG증권 서울지점에 보낸 것임. 그리고 그 내용도 공매도 대금 단기급증, 공매도 대 금의 비중 상위종목 등 여러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종목에 대해 여러 증권사에게 이렇게 일상적인 점검요청 차원에서 E-mail을 보낸 것임. 한국거래소도 당시 UBS AG의 공매도 위반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증권사 E-mail 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UBS AG는 E-mail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내부적으로 위반사항을 스스로 보고 하기로 결정하고 이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것임. 따라서 이런 부분은 명백히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향조정 사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특히, 형법상 자수나 자백 감경의 경우 에는 수사가 진행된 상황에도 감경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은 더욱 하향조정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그러나 가사 자진신고로 보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행위는 조사 업무규정상에 또 다른 하향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조사과 정 등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실임. 금융위 고 시인 조사업무규정 상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나타나 있는 기본과징금 부과비율 판단요소들은 임의적 요인이 아니라 기속사항인 것임. 따라서 UBS AG가 한국거래소에 먼저 자진신고한 사실, 그리고 규정 위반을 먼저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등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사실은 명백한 매트 릭스 상 하향조정 사유로써 이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됨. UBS는 즉각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상 조치를 취하였고 Borrow Book Logic도 개선하 였음. 그리고 한국거래소로부터 매도증권을 80일간 사전 납부하도록 조치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이 기간 동안 모든 차입공매도를 일시 중단하였음.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바 도 없고 SK㈜ 주식의 당일 주가도 전일 대비 1.7% 상승 하여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 께 헤아려 주시기 바람. 끝으로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 고 있으며, 당국에 염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는 점에 대해 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다만,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전혀 연계되지 않은

본 건 사안이 36억 원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의 사안인지, 또한 미체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봐 주시고 자진신고를 한 부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한 부 분도 감경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 람. 만약 본 건이 해당 시점에서 한 달 반 전에만 발생했 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최대 6,000만 원 정도가 부과 되는 사안인데, 현재 60배가 넘는 36억 원의 과징금이 부 과되었음. 그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기를 바람. 가사, 다른 감경요소가 없다고 하더라 도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사업무 규정 상에 이런 개별적 사례(case)에 적용되는 임의적 감 경에 대한 판단 등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임. 자조심에서도 이러한 저희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 UBS는 한국시장에서 건전한 투자활동 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내부통제에도 충실히 노력을 다 할 것임.

- (위원) 진술인의 자진신고 부분과 관련한 진술에서 '한국거 래소나 금융감독원이 본 건 위반을 인지하기 전에' 그리고 '위반사항 인지한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위반사항 을 인지한 계기는 무엇인지?
 - ▶ (진술인)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가 위반한 당일에 최종점검을 하면서 주식수량이 부족하게 된 것을 알고 바로 당일에 40,000주를 차입함.

- (위원) 당일에 점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 ▶ (진술인) 본 대리인이 당일에 특별하게 어떤 점검을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당일에 알게 되었다는 정도로 알고 있음.
- (위원) 어떤 계기 없이 내부적으로 우연히 그냥 알게 됐다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확인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잔고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회사가 "아, 이것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한 건 아닌지? 그리고 아까 진술하신 내용 중에 거래소에서 보낸 E-mail이 UBS AG를 표적(target)으로 해서 문제가 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한테보내는 주의촉구 차원의 E-mail이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증권사들도 그때 그 시각에 이런 E-mail을 다받았는지?
 - ▶ (진술인) 한국거래소 공매도특별감리단에서 보낸 E-mail 에 위에 '점검요청'이라는 엑셀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 (위원) 회원사로 적시되어 있는 이 5개 회원사들이 다 공매 도로 문제가 된 회원사인지?
 - (진술인) 이것이 다 공매도로 문제된 회원사인지는 저희 는 알 수 없음.

-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의촉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E-mail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 ▶ (진술인) 내용을 보시면 선정사유에 '공매도 대금 단기급 증, 공매도 대금 및 비중 상위 종목 등 거래 계좌'라고 이렇게 선정사유가 됨.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전날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된 종목과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이런 차원의 E-mail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선정사유에 보면 당신들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샘플링 (sampling)해 보니까 공매도 대금이 단기적 으로 급증했고 공매도 대금 및 비중 상위 종목 등 거래 계 좌에 대해서 혹시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주의촉 구 E-mail이라는 취지인지?
 - ▶ (진술인)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금 진술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같은 날 다른 5 개의 회원사한테도 이 E-mail이 갔다는 말인데, 이 5개 회원 사가 다 공매도로 문제가 됐는지?
- (보고자) UBS AG만 문제가 됐고 나머지는 차입이 다 정상 적으로 이루어졌음.

- (위원) 그러면 공매도 관련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보낸 E-mail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정하는지?
- (보고자) 인지하고 보낸 E-mail이 아니라 갑자기 공매도가 급증한 계좌들에 대해서 차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맞느냐, 규정 위반이 있느냐고 확인하는 절차임.
- (위원) 이것은 약간 범위(band)를 벗어난 이벤트에 대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해 봐라."하고 일률적으로 보낸 E-mail 아닌지?
- (보고자) 맞음. 그런데 공매도를 한 전체 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점검하는 기준에 따라서 급증한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증빙까지 요청을 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한국거래소나 금감원에서 위법한 공매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아닌지? 이것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감독기관이 과연위법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인지한 이후에 신고했다고 볼수 있는지?
- (보고자) 사전에 결제일 이전에 인지할 수 없는 구조임. 결제일에 최초로 인지할 수 있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그냥 결제일에 실제로 발생하는 것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이전에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심리로이어지게 되는데, 한국거래소의 입장도 이 경우에는 사전신고가 아니라는 입장임.

- (위원) 그런데 과징금 하향조정 사유의 문구(wording)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지?
- (보고자) 네.
- (위원) 이것은 어느 감독기관이 무엇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 (보고자) 공매도 차입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결제일 이후에 무차입이었다는 것이 확인 가능한 구조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신고한 것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 것이라고 저희가 보지 않고 점검과정에서 드러날 부분은 사전에 인지한 것이라는 게 한국거래소의 입장임.
- (위원) 그것은 한국거래소의 입장인 것이고, 저희가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국거래소가 위반행위가 있는 곳을 콕 찍어서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투망식으로 훅 던진 것인데, 샘플링(sampling)해 봐서 약간 통상적인 범위(band)를 벗어난 것 같으니까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개는 위반행위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낸 E-mail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보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음.
- (보고자)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음.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간의 사례에서도 인정해 오지 않았고 실제로 인지 못한 단계에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만 적용해 야 되는 것 아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위원)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거래소에서 발송된 E-mail에 있는 5개 기관 중에 실제 무차입공매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지를 했다, 불법공매도를 인지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음. 왜냐하면이 다섯 기관 중에 무차입공매도를 하지 않은 기관도 있기때문에, 어떤 기준(rule)을 가지고, 말씀처럼 투망을 던지듯이 "확인해 봐라"한 것이지 인지를 하고 나서 지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됨.
- (보고자) 절차상의 한 단계이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적발이 된다는 구조로 지금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감리를 하고 있음.
- (위원) 아까 UBS AG 변호사님은 당일 추가적인 차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는지?
- (보고자) 네. 맞음.
- (위원장) 한국거래소의 일상점검(routine inquiry) 통보를 실제 자진신고 해당 여부와 관련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진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단정해서 금감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무리한 면이 있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무차입공매도였는지 여부

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자진신고감경과 달리 봐서, 어쨌든 자진신고에는 해당이 되지만 이것을 통보받고 했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자진신고보다는 감경을 조금 덜 하더라도 자진신고는 자진신고에 대해 감경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나 금감원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 주시기 바람.

- (위원장) 동 안건은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안건 상정 후 병합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음.
-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38호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조치예정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말씀드림. 조치사전통지상의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치예정자는투자중개업자인 ※※※에게 2021년 8월3일에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105,744주, 8월4일에 동 주식 105,744주, 8월5일 동 주식 35,744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하였으며

※※※증권은 이 매도주문 위탁에 따라 8월4일부터 8월10 일까지 총 6회의 매도호가를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총 210,744주의 공매도가 이루어졌고 공매도가 이루어진 총 금액은 약 251억 원으로 조사됨.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 원은 조치예정자에게 약 7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 지하였음. 저희는 조치예정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말씀 드림. 조치예정자는 한국시각으로 2021년 8월4일 오전 1 시1분경에 ※※※증권에게 GTC형태로 단 한 차례 매도주 문을 위탁했음. 이 매도주문을 한 번 제출하면 취소할 때 까지는 유효한 주문으로 인정되고 GTC주문의 특성상 조 치예정자는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8월4일 단 한 차 례의 매도주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고, 8월4 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매도주문을 제출할 것이 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 조치예정자는 ※※※증권 이 8월4일 제출한 43,564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8월5일 이후에 제출된 246,488주에 대한 매도주문은 조치예정자의 예상을 벗어 난 것임. 이로 인해서 발생한 167,180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책임까지 조치예정자에게 지우는 것은 조치예정자에 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 리고 싶음. 또한, 조치예정자에 대한 제재양정시 위원님들 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이번 사건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에 따라서 신주가 입고될 예정이었는데 조치예정자의 회계시스템 담당직원 이 이를 선반영하면서 거래차단조치를 누락한 과실로 발 생된 것으로써 법 위반에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님. 조치예 정자는 또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시스템을 개선·완료했음. 이에 따라서 앞으로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조치예정자는 8월10일 에 ※※※증권으로부터 주식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지 받아서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한 직후에 공매도 수량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하여 숏포지션(short position) 을 즉시 커버(cover)했고 이 과정에서 한화로 약 2억 2,4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았지만 이를 감수하였음. 조 치예정자는 ㈜에코프로에이치엔 주가가 99,300원일 때 105,000원, 115,000원, 135,000원으로 가격을 지정해서 지 정가로 매도주문을 위탁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치예정자는 주가하락을 예측해서 투기목적으로 공매 도 주문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음. 만 약에 조치예정자가 주가하락을 예측하고 이익을 보기 위 해 공매도를 제출한 것이라면 8월3일 종가보다 높은 가격 으로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함. 본 건에서는 조치예정자의 공매도 주문에 따른 시장 영향도 찾기 어려 움. 이 사건 공매도가 발생한 8월4일부터 8월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와 코스닥150 지수 의 흐름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 기간 동안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본 건 공매도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 다는 점을 보여줌.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는 8월10일 에만 유일하게 전일 대비 종가가 하락하였는데 코스닥150 지수도 그날만 하락했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함. 그 렇다면 8월10일의 하락도 이 사건 공매도의 영향이 아니 라 시장 전체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조치예정자가 제출한 공매도 주문금액은 총 110억 원 가 량임. 그런데 사전통지된 과징금 금액은 79억 원 가량임. 이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70%가 넘는 규모로써 조치예정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측면이나 시장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필요한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측면이 있음. 조치예정자가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공매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사태수습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 금융감독원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전통지된 79억 원이라는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모두 고려하셔서 조치예정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처분을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 (위원) 아까 진술하실 때 GTC 주문 자체가 투자자가 주문을 직접 취소할 때까지 주문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조건의 주문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GTC 주문을 한 경우에 계속해서 ※※※증권은 회사 측에서 주문을 취소하지 않을 때까지 주문이 계속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예측가능 한 상황 아닌지?
 - ▶ (진술인) 그러니까 주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제출될 것이라는 것은 조치예정자가 예측할 수 없었음.
- (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매도를 할 때는 이 GTC 주문을 했는데 회사가 주문을 취소하지 않아 주문이 유효한 상황에서 유효하지만 아직 체결이 안 된 경우에도 계속 날짜를 바

꾸어 가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지?

- ▶ (진술인) 위원님의 말씀이 맞음. 다만, 한국거래소에서는 GTC 형태의 주문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이런 GTC 주문이 보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러한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주문위탁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거듭해서 주문이 제출되지 않고 계속 살아 있음. 다만, EMA측에서는 한국시장에 주문을 하면서 중개업자인 ※※※증권 측에서 그러한 점을 지금까지 한 번도, GTC 주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지해 준 적이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EMA가 ※※※증권과 거래한 것이 이것이 처음인지?
 - ▶ (진술인) 아님. 과거에도 거래를 했는데, 과거에도 단 한 번도 통지를 받거나 혹은 GTC 주문 이후에 계속해서 거 듭 주문을 제출할 때 그러한 주문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통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주문의 유효기간이 하루가 아닌 계속 유효성이 인정되는 기간이면 한 번만 주문해 놓으면 그 주문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총계를 누적해서 합산이 되지 않을 텐데 한국은 주문의 유효기간이 하루 밖에 안 되니까 그 GTC 주문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문했다가 그 주문의 효력이 사라지면다시 또 주문하고 다시 또 주문하는 식이 되는 바람에 중복산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씀인지?

▶ (진술인) 맞음. 이 조치예정자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장에서 GTC 형태의 주문이 허용된 다고 착오를 한 부분도 맞음. 다만,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 장법상 공매도 규제는 주문금액에 따라서 위반규모가 책 정되고 있는데 그 주문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에는 조치예 정자의 책임만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말 씀을 드리는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위원님께서 진술인한테도 확인요청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어떤 경위로 확인이 됐는지? 회사가 자진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 (보고자) 제37호 안건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결제일 오전10시까지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됨. 이때 수탁사인 증권사는 결제수량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그때까지 입고가 되지 않으면 지금 무차입상태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인지한 수탁사는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이것은 자진신고가 아님. 절차임.
- (위원) 그것은 미결제가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드러난 것이라는 것인지?
- (보고자) 네. 일단, 그날 결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예탁 원이나 증권금융 등을 통해서 우선 차입을 해서 결제를 하

고 장내매수를 통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위원) ※※※증권에서 진술하러 오신 진술자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면, 아까 진술인께서 GTC 주문과 관련되어서 중개업 자인 ※※※증권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진술을 하는데 회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문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매도주문을 위탁할 경우 이렇게 여러 일에 걸쳐서 같은 수량의 주문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
- (보고자) 우선, 3가지의 주문가격을 지정해서 분할 매도주문을 제출했음. 그중에 가장 높은 매도주문이 135,000원인데이 가격은 당일 상한가를 초과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출될수 없는 주문임. 그래서 이 가격이 오게 되면 매도해 달라는것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이전부터 4년간 21차례의 GTC주문을 ※※※증권이 국내에서 해 왔고, 또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GTD 거래도 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서 체결된 것까지 통보가 됐음. 그런데 그간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없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
- (위원) 8월9일에 70,000주가 거래됐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은 26,000주 정도였고, 43,000주가 D+2일, 그러니 까 11일에 결제가 안 되었던 것인지?
- (보고자) 네.
- (위원) 그러니까 인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수탁사인 ※※※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신고를 했지만 그것은 자진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

- (보고자) 네. 규정상 절차임.
- (위원) 그러면 8월11일에 결제불이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급하게 차입을 해서 일단 메운 것인지?
- (보고자) 급하게 차입을 해서 결제불이행은 발생하지 않았음.
- (위원) UBS AG와 이 건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 (보고자) 매도방식의 차이는 다소 있음. UBS AG의 경우에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거래가중평균가격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했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주문이 나갈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임. 얼마가 제출이 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체결수량을 맞출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반면 ESK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했기 때문에 그 수량이 계속 나갈 것이라는 주문수량은 명확히 알고 있음. 다만, 그 가격대를 상한가보다 더 높은 가격 아니면 항상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함.
- (위원) 시장의 어떤 하방압력은 없었다는 말인지?
- (보고자) 네.

- (위원) UBS AG는 당일에 차입이나 매수를 해서 자기물량으로 결제를 한 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 (보고자) 네.

(17시 38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 ○ (위원장) 제37호와 제38호 안건에 대하여 동 건은 공매도 규 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임. 본 사건 조치대상자 들은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면서 차입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하 여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률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다만, 조치대상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착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자진신고가 일부 인 정되는 점, 최근 5년 이내 공매도 제한위반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조치대상자들의 규제위 반 행위로 인한 시장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점, 구체적으로 동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된 손실이 없다는 것과 조 치대상자별로 최종 주문수량을 일부 알지 못한 점, 그리고 주문가가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위 탁범위를 초과하는 주문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과도 한 점, 그간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었던 제재 처분과의 형평성 및 제재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체결 주문금액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50%'에서 '70%'

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들의 위반행위 동기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조정하고 미체결 주문금액에 대한 감경률을 '50%'에서 '70%'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도록하겠음. UBS AG에 대해서는 2,183,800,000원, ESK에 대해서는 3,874,000,000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함.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소관부서는 공매도에 대한시장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ㅇ 각각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각각 수정의결함
- □ 의결안건 제39호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 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설명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하나증권㈜ 준법감시인 OOO임. 세 가지 간략히 말씀 올리겠음. 첫째, 시민단체의 고발로 5년간 심사 중단 된 사안이나 실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음. 관련하여 법 원은 판결에서 피고발인은 피해자라고 하였음. 다음으로 다른 사모펀드 '기관경고' 사안 대비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임. '기관경고'는 2017년 12월 심사중단 이후인 2019 년 영업을 근거로 한 처분임. 하나증권㈜은 다른 사모펀 드 기관경고 판매사와 달리 혼동을 유발하는 요약자료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용사에게 상품설명서 부정확한 부분을 적극 시정 요청했음. 조직적 불완전판매 발생하지 않았고 판매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이 었음.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단 1개 지점에서 일어난 판 매이고 본사 차원의 캠페인이나 독려 없었음. 물론, '기관 경고' 징계 이후에도 수익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 력을 하고 있고 합의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임. 마지막 으로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임. 5년간 경영권 공백으로 신규 충원은커녕 우수인력이 이탈 하고 있고 운용자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IT시스템과 정보보안투자가 5년간 중단되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심 히 우려되고 있음. 이렇게 기업가치가 하락되는 경우 고 가매수 논란에서 피할 수 없음. 또 안타까운 것은 기존 주주 간 약정, 경업금지로 인해 이 와중에도 하나금융그 룹 전체가 본 건이 아닌 한 자산운용업에 진출할 수가 없 는 처지임. 매년 배당금 40억 원 상당이 유출되고 있고 장기간 공전(空轉)때문에 향후 UBS AG로부터 책임추궁 당할 위험도 있음. 이러한 사정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림.

 (위원장) 첫 번째, 아까 경영권 공백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당장 대주주가 없는 것은 아닌지? UBS AG라는 대주주가 있고 그런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협의 해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마치 심각한 경 영권 공백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조금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림. 두 번째는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말씀을 함. 물론 사모펀드의 판매사책임을 강화하는 후속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관경고'까지받아놓고 하나증권㈜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 (진술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5년간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되면서 추가투자나 적극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바람에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임. '기관경고'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제재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증권㈜이 여러 가지 잘못을 분명히 저지른 것은 맞음. 그렇기때문에 '기관경고'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에 의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추후 하나증권㈜으로부터 '23.7월말 기준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건이 2023년 8월26일까지인지? 저는 '결격기간 만료일 기준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저희가 조건 부로 변경승인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 (보고자) 2021년도에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허가 건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 건으로 허가한 건은 있음.

- (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건의 표현, '※ 추후 하나증권㈜으로부터 '23.7월말' 이 표현은 '※ 추후 하 나증권㈜으로부터 '23.8월26일 기준 심사자료를 제출받아 대 주주 변경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 이렇 게 표현을 바꿔주시기 바람.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ㅇ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워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 27분 폐회)